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1. 제7.8조제2항 및 제7.14조제2항의 목적 상, 중대하게 더 높은 수준이 되기 위해 지역경제통합협정에 규정된 의무는 서비스 및 설립에 관한 내부 시장¹을 창설하거나 설립의 권리 및 법령의 근접화 모두를 포함한다. 의무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또는 수평적 약속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가. 이 항에 언급된 **설립의 권리**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발효 시까지 그 지역협정의 당사자들 간에 설립에 대한 모든 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립의 권리는 그러한 설립이 시행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규정되는 조건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국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나. 이 항에 언급된 **법령의 근접화**란 다음을 의미한다.

- 1) 지역경제통합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의 법령을 그 협정의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법령과 정합시키는 것, 또는
- 2) 공통되는 법령을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질서에 통합시키는 것. 그러한 정합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국내 법적 질서 내로 입법화된 시점부터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¹ 서비스 및 설립에 관한 내부 시장이란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내부적 경계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2. 양 당사국은 제7.8조제2항과 제7.14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경제통합협정을 제7.3조에 언급된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지역경제통합협정의 서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3.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부속서의 제2항에 언급된 통보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서 또는 별개의 협의에서 그 지역경제통합협정의 제7.8조제2항과 제7.14조제2항 및 이 부속서의 조건과의 합치성을 논의하고 검토한다.